

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안 제12조, 제13조 및 제14조를
각각 안 제7조,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7조(생태관광위원회의 설치) ①</u></p> <p><u>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」 제12조를 준용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생태관광지역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</u> <u>2. 시민단체, 환경단체,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</u> <u>3. 관계 공무원</u> <u>4.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</u> <u>5.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</u> 	<p><u><삭 제></u></p>

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

1. 생태관광 육성·지원 기본계획
2.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
3.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
4.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제10조(회의 등) ① 구청장이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 주고,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 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

<삭 제>

<삭 제>

위원에게는 「대구광역시달서
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
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
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
수 있다.

제12조 ~ 제14조 (생 략)

제7조 ~ 제9조 (현행 제12조부터
제14조까지와 같음)